

통장모집취소공고

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고 제2020-96호(통장모집공고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 취소함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장



1. 통장모집 취소 대상

- 고기 1통 : 고기동 2~280
- 고기 2통 : 고기동 29~633, 633~747

2. 통장모집 취소 사유

- 용인시 통·리·반 설치 및 통장·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0. 12. 14.字로 공포되어 기준 고기 1, 2통이 아래와 같이 분통됨에 따라 해당 통 통장모집 공고를 취소함.

별표 28 동천동의 고기1통란과 고기2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고기1통 (고기동, 손기)	1반	고기동 2~150
고기2통 (고기동, 곡현)	1반 2반	고기동 400~633 고기동 634~747

별표 28 고기3통란 다음에 고기4통란과 고기5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기4통 (고기동, 화전골)	1반	고기동 151~280
고기5통 (고기동, 배나무골)	1반	고기동 281~399

* 분통 기준 통장모집 공고 예정일 : 2020. 12. 14.(월) 이후